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문성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4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문성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김규남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도문열, 박영한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아이수루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최유희, 허·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4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쾌적하고 깨끗한 상품의 상행위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위원으로 교통전문가를 추가함(안 제4조)
- 나. 위치부적정 시설물 중 버스승강장, 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에 위치하거나 횡단보도 근접해 보행자 통행 불편 초래하는 등의 시설을 이전하는 기준을 구체화함(안 제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마목 등)
- 다. 가로판매대에서 취급 가능한 물품 외 판매금지 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제3항제5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등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법조인·사회복지전문가·시민단체대표”를 “법조인·사회복지전문가·교통전문가·시민단체대표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“버스승강장·택시승강장 주변”을 “버스승강장·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접근 파악을 방해하는 시설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,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.</p> <p>1. 위원 중 5명은 <u>법조인·사회복지전문가·시민단체대표</u>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, 2명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,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</p>	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법조인·사회복지전문가·교통전문가·시민단체대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위치부적정 시설물

가.·나. (생략)

다. 버스승강장·택시승강장 주변에 위치하여 버스·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

라. (생략)

<신설>

마. (생략)

③ (생략)

제9조(행위의 금지) ① ~ ② 생략

③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

<신설>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버스승강장·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에-----

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접근 파악을 방해하는 시설물

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행위의 금지) ① ~ ② 현행과 같음

③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
가. 신문, 잡지, 음료,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물품을

가.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

나. 음란·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

다.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. 다만,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, 햄버거, 샌드위치, 건포(乾脯)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.

라.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

6. (생략)

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

나. (현행 가목과 같음)

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

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

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

6. (현행과 같음)